

태국 입국 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물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 기기, 위험 물질, 정신 및 신경 작용 물질, 마약류 및 약초로 만든 약 등의 건강기능제품과 물품을 태국 입국 시 반입하는 것은 여행자의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태국법에서 정하는 금지식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하는 법에 따라 실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식품은 개인소비 목적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반입량 이내, 총중량은 20k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순서	제품	지정수량
1	우유 및 유가공품 (예 : 분유, 아이스크림, 치즈, 유청 단백질, 요거트, 푸딩 등)	5 kg./5 lit.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예 : 으깬 커피, 원두, 생두, 캡슐 커피 등) • 인스턴트 음료 제품 (예 : 차, 커피 믹스 등) 	5 kg.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결건조 커피 (FD 커피) • 차음료는 찻잎과 가루차(분말차/말차) 등이 있고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와 같은 음료도 포함된다. 	1 kg.
4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자일리톨, 스테비아 등과 같은 설탕 대체품	1 kg.
5	영양제	품목당 소비량이 6 개월 이하, 모든 품목은 10 품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식물, 채소와 건조 과일	5 kg.
7	향신료 (사프란, 바닐라 등) 및 건조 식품 (제비집, 삭스핀, 물고기 부레 등)	1 kg.
8	식품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른 곡물 (퀴노아, 견과류 등) • 과자/간식 (스낵, 사탕 등) • 시럽(즙)류 (꿀, 물엿 등) • 무알콜 음료 (과실음료, 청량음료 등)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및 유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등) 	10 kg./10 l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료가 있거나 없는 면, 파스타, 스파게티, 라멘이나 라면 •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간장, 식초, 그레이비, 마요네즈 등) •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및 가공식품 (발효, 통조림 등) • 오일류 (식용류, 올리브유 등) • 유아용품 및 의료용 식품 • 모유 	
9	기타 식품	식품을 수입하려면 1 번부터 8 번까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식품 분류는 태국법에 따라 다릅니다.
- 2. 대마초가 함유된 식품의 수입 금지

화장품류

화장품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류당 6 개 이하, 총 30 개까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 종류당 3 개를 수입하면 총 10 종류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대마초가 함유된 화장품의 수입 금지

의료기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 기기를 반입할 수량이 제한됩니다.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의료기기 제품 정보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예 : 제품명, 라벨, 지침서, 전성분, 특성,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

나.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계획서 및 의료기기 판매하지 않을 확인서

다. 수입추천용 진단서 (자가사용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이 명시된 것) 및 요건면제확인 의료기기 사용동의 확인서

의약품

의약품은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사용을 위한 반입 수량입니다.

약초

약초는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90 일 이내에 사용을 위한 반입 수량입니다. 그러나 약초 세부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1. 수입하는 약초 제품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른 판매 금지, 수입 금지, 생산 금지된 제품이 아니며 사용 금지된 약초의 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2. 대마초가 함유된 약초의 수입 금지

정신 및 신경 작용 물질

정신 및 신경 작용 물질은 알프라졸람(alprazolam), 미다졸람(mid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등의 제 2 종부터 4 종까지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30 일 이내에 사용을 위한 반입 수량입니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정보가 있고는 의사 진단서 및 관련 처방전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 및 신경 작용 물질 확인 :

https://permitfortraveler.fda.moph.go.th/nct_permit_main/)

※ 제 1 종 정신 및 신경 작용 물질 반입 금지



마약류

자가 사용(의료 등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식약청(Thai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 https://permitfortraveler.fda.moph.go.th/nct_permit_main/)



위험물

태국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은 4 가지 분류합니다. 제 1 류 위험 물질을 수입하려면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 보기 : <https://hazard.fda.moph.go.th/our-service/category/permission>)



개인소비 목적으로만 가정 이내에 사용하기 위해 제 2 류과 제 3 류 위험 물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5kg 또는 5 리터까지 초과하지 않아서 사용을 위한 반입 수량입니다.입니다.

(위험물 종류 확인 : <https://hazard.fda.moph.go.th/laww/category/law-02>)

※제 4 류 위험 물질 반입 금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태국 식약청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th Floor, Building 5

8/24 Tiwanon Road; Nonthaburi, Thailand 11000

전화번호 : 02 590 7363-4

팩스 : 02 591 8477

E-mail: inspection@fda.moph.go.th

Line Official : @import.fda

홈페이지 : <https://logistics.fda.moph.go.th/>

